

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5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5. 6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5. 4.

(제12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부과장 허 길 중

나. 제안사유

- 각종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등기우편발송의 경우 우편요금 과다와 부재 및 주소변동으로 반송 등 고지불능으로 체납사유가 발생하므로 이.반장에게 위탁하여 고지서를 전달하면 지방세징수 홍보 및 주소변경으로 인한 반송을 저하로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코자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방세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을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음. (안 제4조 제1항)
- 이.반장이 서류를 송달 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.
(안 제16조의2 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안영순)

-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시 등기우편 발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.반장에게 위탁하여 고지서등을 전달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임.
- 본 개정안은 법규상,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 ①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화순군 반설치조례 및 화순군이장의임명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군수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(신 설)	<p>제16조의2(서류송달의 방법)①영 제 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화순군반실치조례 및 화순군 이장의임명예관한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이장 또는 반장을 통하여 위탁 교부할 수 있다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군수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